

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경환 의원·이효상 의원 대표공동발의)

의안 번호	142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3. 29.

발 의 자 : 이효상 · 김경환 · 김영길
김순점 · 이복희 · 권태호
서경환 · 강혜순 · 천병태
오세라 의원(10명)

1. 제정이유

어린이들이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조기에 안전교육을 받아 안전수칙을 생활화 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~2조)
- 나.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- 다.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)
- 라.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~7조)
- 마. 안전교육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~11조)
- 바. 안전도시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2~14조)

3. 근거법규

- 아동복지법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15조
- 영유아보육법 제2조
- 유아교육법 제2조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

4. 조 례 안 : “따로 붙임”

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들이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받아 안전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,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어린이”란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가진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.
2. “안전도시 관리”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구 소재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여 이들의 생명·신체·정신 등이 위험과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·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.
3. “안전사고”란 화재·교통·수난·추락·약취·유인·성범죄·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안전도시 관리 및 지원에 관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구 소재 어린이 교육시설, 통학로, 놀이시설, 오락시설, 역사·추락 위험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책무)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.

1. 안전도시 관리 및 교육, 안전지도 등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추진

2. 제1호에 따른 시책의 결정, 집행 등 과정에서 보호자, 구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
3.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안전도시 관리 및 교육 등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
 - ②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·방치·억압·폭력 등으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.
 - ③ 모든 구민(구의 주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어린이의 사고(思考)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.

제2장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

- 제5조(기본계획)**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관리의 종합적·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해야 한다.
- ② 기본계획에는 안전도시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
 2. 안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 - 가. 실태조사
 - 나. 사고예방 관련 부문별, 단위사업별 계획
 - 다. 교육 대상시설 현황
 - 라. 관리프로그램 개발·운영 및 교육·홍보
 - 마. 유해감시 및 보호관련 활동
 3. 제10조에 따른 안전교육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원 확보방안
 4.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
 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)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제6조(협조요청)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·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·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7조(실태조사 등)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3조의 적용대상 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.

제3장 안전교육 및 사업추진

제8조(교육실시 등) ① 구청장은 구가 설치·운영 중인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하여 어린이와 부모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안전도시 관리 및 교육(이하 “안전교육”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해당 교육 수료증 등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제9조(결과보고) ① 구가 설치·운영 중인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해마다 한 차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②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과

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안전교육 실시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다.

제10조(사업추진 및 범위) ① 구청장은 안전교육의 효과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기관, 민간단체, 언론기관,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사업(이하 “안전교육사업”이라 한다)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.

② 안전교육사업의 추진범위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.

1. 자료의 제작 및 보급
2. 해당 교육 및 홍보활동
3.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4. 사례수집·활용 및 선진지 견학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1조(위탁·대행 및 참여) ① 구청장은 안전교육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구 소재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이나 자격을 갖춘 기관·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그 사업수행에는 구 소재 관련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위탁 또는 대행경비를 보조하고, 제2항의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한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안전교육사업의 위탁운영, 보조금의 신청·교부·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, 「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4장 안전도시 관리위원회

제12조(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울산

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도시 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안전도시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 및 시행
2. 안전교육사업의 추진범위 및 대상
3. 국내·외 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적 의견의 수집·분석 및 반영
4.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 관련 의견수렴
5.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
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.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
하는 회의는 부구청장이 주재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
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, 당연직 위원은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
 - 가. 학대 및 성폭력 예방
 - 나. 실종·유괴의 예방 및 약물 오·남용
 - 다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40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
2.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3. 울산광역시 중구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사람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소속 담당자 또는 종사자
 - 가.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 교육기관
 - 나. 경찰, 검찰, 법원 등 경찰·사법 관련기관
 - 다. 해당 기관 또는 시설
5. 그 밖에 구청장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및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 또는 담당·종사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여성청소년과장이 된다.

- 제14조(회의 운영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위원회는 해마다 한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⑤ 위원회의 회의고지·공개·의견청취, 위원의 위촉해제 및 수당·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장 보칙

- 제15조(표창)** 구청장은 안전도시 관리 및 안전교육사업의 수행에 공적이 뚜렷한 구민, 기관·단체 등에 대해서는 「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관 계 법 령>

아동복지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<개정 2014.1.28.>

1. "아동"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2. "아동복지"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·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·사회적·정서적 지원을 말한다.
3. "보호자"란 친권자, 후견인, 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호자 등의 책무)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.

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15.3.27.>

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,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3.27.>

제15조(보호조치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.28.>

영유아보육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<개정 2008.12.19., 2011.6.7.>

3. "어린이집"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.

유아교육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3.24., 2012.3.21.>

2. "유치원"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

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의4(시설의 안전점검 등)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(改修)·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, 시설의 보완 및 개수·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, 안전점검 시기,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8.4.]

[제34조의3에서 이동 <2011.8.4.>]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제40조(안전관리전문기관)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2.5., 2014.11.19., 2015.7.24., 2016.4.26., 2017.7.26., 2018.1.16.>

1. 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
2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
3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
4.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
5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
6. 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7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
8. 「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교통안전공단
9.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도로교통공단
10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한국방재협회

11. 「소방기본법」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
12. 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
13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
[전문개정 2010.12.7.]